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1):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

황동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북한은 상호 경제 교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남북 경협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동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기반이 다소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사되는 등 남북한 경제 협력은 점차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 교역에서 더 발전하여 위탁 가공 및 투자 협력 사업으로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를 즈음하여 본 지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수 제정되어 있는 북한의 외국 투자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사전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애매모호한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의 내용을 ①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 ② 노무 관리, ③ 자재 및 판매 관리, ④ 토지, ⑤ 금융(외환·보험), ⑥ 조세, ⑦ 분쟁처리 및 청산제도 등 크게 일곱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첫번째인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나
국진·선봉지대를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
 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對북한 투자는 지
 금까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¹⁾ 이와 같이
 저조한 실적은 북한의 투자 환경 자체가 열
 악한 것이 주 요인이겠지만, 그에 덧붙여 외
 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절차와 내용

1) 1997년 12월말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외국인 투자 계약 체결 실적은 111 건, 7억 5,077만 달러, 실제 집행 실적은 77 건, 6,242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는 데도 기인한다 하겠다.

여기서는 우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절차 및 정보를 소개하고, 설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가 범위와 투자 분야

먼저 투자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관·기업소 및 단체를 북한측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은 투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외국 투자가는 외국 법인, 개인 및 기타 경제 조직을 들고 있으며, 특히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규정(「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개정 「합영법」(1994. 1) 및 同시행 규정)이 있어, 남한 기업도 투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 보호나 기타 국가 발전 상의 목표로 인해 가능 분야와 제한·금지 분야 등으로 투자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법규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관광·유통·금융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및 자원 개발·하부 구조 건설·과학 기술 분야를 장려하고 있다. 한편, 민족 경제 발전과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분야는 투자를 제한·금지하고 있다(「외국인 투자법」 제6~8조).

설립 과정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은 크게 설립 신청, 승인, 등록, 출자 및 영업 허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절차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합영 기업

합영 기업의 경우 설립 신청자가 북한측 투자자이다. 외국 투자가와 합영 계약을 맺고, 북한 대외 경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등록하면 기업이 조직된다. 그 후 출자 및 기업 경영 준비를 마친 후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먼저 설립 신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설립 신청자는 북한측 투자자²⁾만이 될 수 있다. 북한측 투자가는 외국 투자가와 합영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합영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합영계약서 사본, 기본규약 및 경제기술타산서 등을 작성한 후

2) 북한의 기관·기업소 및 단체가 북한측 투자자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은 투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신청서를 제출한다(「합영법」 제9조).

따라 정무원 대외 경제 기관과 지대 시행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및 승인 대상에

경제위원회³⁾가 신청서 접수후 50 일 이내에

〈표 1〉 기업 설립시 구비 서류 및 기재 내용

제출 서류	기재 내용
합영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명칭, 소재지 · 계약 당사자 이름, 소재지 · 기업 목적, 업종, 경영 범위, 규모, 존속 기간 · 총투자액, 등록 자본, 출자액, 출자액, 출자 명세, 출자 기간, 출자액 양도 · 이사회 조직과 운영 · 직업동맹 조직 · 경영 관리 기구 정원과 직능, 종업원 수(외국인 수), 노무 관리 · 생산물 처리, 설비, 원료, 자재 구입, 기술 이전 · 재정 무기 및 외화 이용 · 결산과 이윤 분배, 기금의 조성 및 이용 · 해산과 청산 · 계약 위반 책임 및 면제, 분쟁 해결 · 계약 내용 수정, 보충 및 취소, 보험, 불가항력적인 사유, 준거법 · 계약의 효력 · 기타 필요 사항
기본 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명칭, 소재지 · 합영 당사자 이름, 소재지 · 기업 목적, 업종, 생산 품종 및 규모, 존속 기간 · 총투자액, 등록 자본, 출자액, 출자 내용, 출자 기간, 출자액의 양도 · 이사회 구성과 임무, 이사회 운영 방식, 통지 방법, 기업 법정 대표 · 경영 관리 기구, 관리 성원 및 임무 · 재정 무기, 노력 관리 · 결산과 분배, 기금 · 해산과 청산 · 기타 필요 사항
경제기술타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건설 관련 자료, 생산 및 생산물 처리 관련 자료 · 노력 · 원료 · 자재 · 자금 · 동력 · 용수의 소요량과 보장 대책 · 단계별 수익성 타산 자료, 기술적 분석 자료 · 환경 보호, 노동 안전 및 위생 관련 자료 · 기타 필요 사항
합영기업창설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명칭, 소재지 · 합영 당사자 이름, 소재지 · 기업 창설 목적, 유익성 · 총투자액, 등록 자본, 출자액과 출자액, 출자 및 투자 단계와 기간 · 계약 날짜, 기업 존속 기간, 조업 예정 일자 · 업종과 경영 범위 · 생산 능력과 생산 제품의 수출 비율 · 부지 면적과 위치 · 연간 예정 이윤과 분배 · 관리 기구 정원 및 종업원 수 (그 가운데 외국인 수) · 기타 필요 사항

자료: 합영법 시행 규정 제15~17조, 제19조.

3) 정무원 대외 경제 기관은 지대 밖의 합영 기업 설립 및 지대내 총투자액 2,000만 원 이상의 하부 구조 건설과 기타 부문에서의 총투자액 1,000만 원 이상의 합영 기업 설립의 경우에 한해 심사를 맡게 된다. 그밖의 경우는 지대 시행정경제위원회가 맡는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23조).

기업 설립 승인을 받으면 기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영 당사자는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 당국에 기업 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을 받는다. 합영 회사는 등록 기관에 등록한 때로부터 법인격을 취득하며(합영법 시행 규정 제26조), 기업 등록일이 기업 창설일이 된다. 그와 동시에 기업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재정 기관에 세무 등록, 세관에 세관 등록을 해야 하며, 북한내 보험 기관에 부보 의무도 지니게 된다.

등록이 끝난 후 기업 출자가 이루어진다. 출자 비율은 합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출자 대상으로는 화폐 재산⁴⁾뿐만 아니라 현물 재산과 발명권, 기술 문헌 등으로 출자할 수 있고, 그 경우 평가는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영 당사자들이 결정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39조). 출자 지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45조). 구체적 출자 방식은 <표 2>, <표 3>과 같고, 합영 기업의 설립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2> 출자 횟수 및 출자 기간 연장

출자 횟수	1 회 전액 출자시	· 기업 등록후 6 개월내 출자
	복수 출자시	· 첫번째 출자: 기업 등록후 90 일 내에 출자액의 15% 출자 · 나머지: 기업창설신청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자
기간 연장	· 출자 기간이 끝나기 1 개월 전에 12 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자료: 합영법 시행 규정 제40조, 제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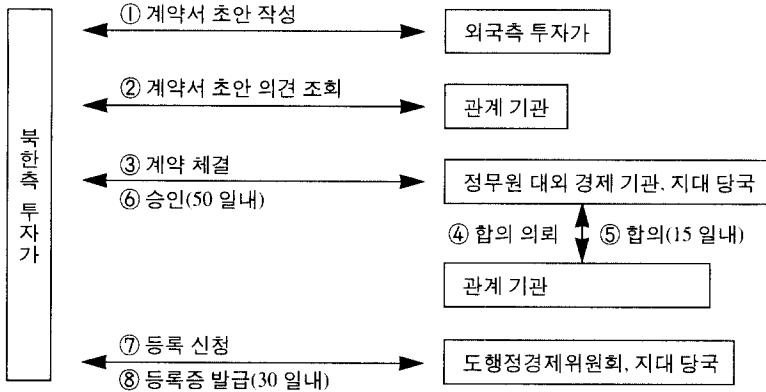
<표 3> 등록 자본 규모

총투자액 규모	등록 자본/총투자액(비율)
300만 원까지	70% 이상
300만 1~600만 원	65% 이상
600만 1~2,000만 원	45% 이상
2,000만 1~6,000만 원	35% 이상
6,000만 1 원 이상	3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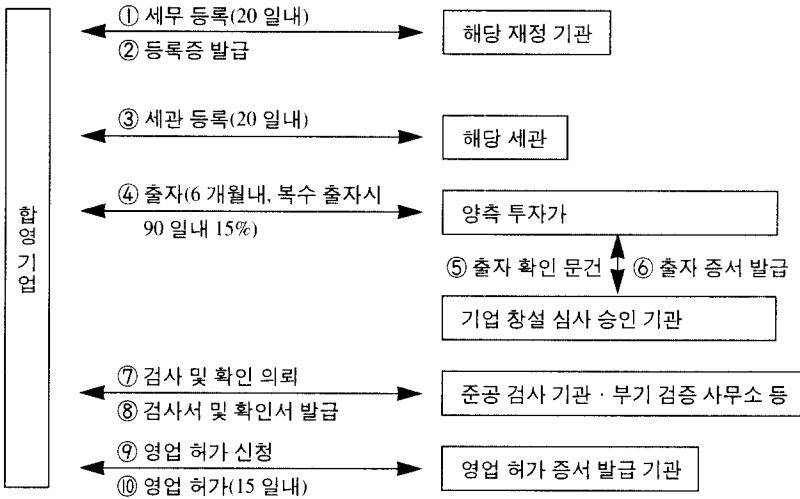
자료: 합영법 시행 규정 제46조.

4) 해당 금액을 외화 관리 기관과 합의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며, 외화로 출자할 경우 지불 당일 무역은행 발표 환율을 적용한다.

<그림 1> 합영 기업의 설립 절차



기업 등록후



합작 기업

합작 기업의 설립 절차는 합영 기업과 거의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북한측 당사자가 상급 기관과 협의하여 정무원 대외 경제 기관에 합작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무원 대외 경제 기

관은 접수일로부터 50 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합작법」 제7조). 합작이 승인된 후 30 일 이내에 도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기업 등록후 20 일 이내에 세무 등록 및 세관 등록을 마쳐야 한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27~28조). 합작 기업은 승인된 합작 업

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할 때는 정무원 대외 경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합작법」 제9조).

출자의 경우 출자 비율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나, 외국 투자가는 등록 자본의 3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36조). 그외의 출자 방식은 합영 기업과 동일하다. 그런데 권리 양도에 있어서는 합영 기업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합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와 함께 정무원 대외 경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합작법」 제10조). 즉, 합영 기업의 경우보다 양도 요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 설립 신청자는 당연히 외국 투자자이다.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 신청서에 정무원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기업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금 신용확인서 등 심의 기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제7조). 정무원 대외 경제 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외국 투자가는 승인후 30 일 이내에 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세무 등록 및 세관 등록을 마쳐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제9조).

출자의 경우 출자 대상 및 회수는 합영 및 합작 기업과 비슷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운영상 합법적 이윤의 일부나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으며,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하에 증자나 양도가 가능하지만, 감자는 불가능하다. 등록 자본 규모는 <표 4>와 같다.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상의 문제점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의 문제점을 앞서 설명한 설립 절차에 따라 투자자 범위와 투

<표 4> 등록 자본 규모

총투자액 규모	등록 자본/총투자액(비율)
600만 원까지	65% 이상
600만 1~2,000만 원	45% 이상
* 900만 원까지	410만 원
2,000만 1~6,000만 원	35% 이상
* 2,700만 원	950만 원
6,000만 1 원 이상	30% 이상
* 7,700만 원	2,600만 원

자료: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26조.

자 대상, 설립 신청, 등록, 출자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투자가 범위와 투자 대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북한측 투자가는 기관·기업소·단체로서, 개인은 투자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 역시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북한측과의 접촉시 접촉 인사가 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상 남한측이 투자할 수 있는 근거인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조항(「외국인투자법」 제5조)도 상당히 애매

〈표 5〉 외국인 투자 관련 법에서의 투자 분야

구분	가능 분야	장려 분야	제한·금지 분야
외국인투자법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과학 기술·관광·유통·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	·첨단 기술 등 현대적 기술과 국제 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 ·자원 개발 및 하부 구조 건설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민족 경제 발전과 국가 안전에 지장 ·경제 기술적으로 낙후되고 환경 보호에 저촉되는 부문
합영법 시행 규정	·과학 기술·전자·자동화·기계 제작·금속·채취·동력·건재·제약·화학 공업 부문·건설·운수·금융·관광·봉사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	·첨단 기술·현대적 기술 도입 부문·국제 경쟁력이 높은 제품 생산 ·하부 구조 건설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금지: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 국가 안전과 사회 공동의 이익 저해 부문 ·제한: 환경 보호 기준 저해 부문, 설비, 생산 공정 낙후 부문,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부문, 경제적 효과 적은 부문
합작법 시행 규정	·수출 제품 생산, 선진 기술 도입 생산, 관광·봉사 부문	·현대적 설비 및 첨단 기술 투자 부문 ·국제 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자원 개발 및 하부 구조 건설	상동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전자, 자동화, 기계 제작, 동력 공업, 식료 가공, 피복 가공, 일용품 공업, 건재, 제약, 화학, 건설, 운수 및 봉사, 이밖의 필요 부문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를 만족시켜야 창설 가능 ·현대적 기술 ·국제 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	규정없음	·공화국 안전에 위협·지장을 주는 경우 ·인민의 건강 보호와 국토·자원에 피해를 줄 경우 ·설비와 생산 공정이 경제 기술적으로 낙후된 경우 ·생산 제품의 국내외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업종과 경영 방침이 인민의 건전한 사상 감정과 생활 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자료: 통일원(1997),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집」.

하다. 공화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틀려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체로 남한측도 투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석되지만, 북한측의 명확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는 투자 가능·장려·제한·금지 분야가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법규마다 조금씩 다르며, 또한 조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조항 내용의 불명확성은 북한 당국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에서는 업종과 경영 방침이 인민의 건전한 사상 감정과 생활 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외국인 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9조)고 하여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투자가 가능한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설립 신청과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기업 설립과 관련된 문제로는 북한 당국의 사전 심의 절차가 있어 사실상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합영법」에서는 합영 당사자가 관계 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 계약을 맺은 다음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합영법 시행 세칙에는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승인 기관이 관계 기관과 합의한다고 되어 있어 법규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또한 관계 기관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로서는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립 신청인의 경우 외국인 기업을 제외하고 합영·합작 기업은 설립 신청인이 북한측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설립 과정이 북한측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립 신청시 첨부 문건의 종류가 투자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어 있으며(〈표 6〉 참조), 필

〈표 6〉 설립 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합영 기업	· 합영기업창설신청서, 기본 규약, 합영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영 당사자의 거래 은행 신용 확인 자료와 같은 문건
합작 기업	· 합작신청서, 기본 규약, 합작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작 당사자 거래 은행의 신용 확인 자료
외국인 기업	·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기본 규약, 경제타산서, 투자자에 대한 증명 문건, 투자 기계 설비 및 자재 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설명서, 투자자의 자본신용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문건

자료: 합영기업법 시행 규정 제19조, 합작기업법 시행 규정 제22조,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12조.

요한 문건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 이러한 신청 과정 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의 자의적 적용이나, 특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설립 사전 심사 및 승인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승인 기관은 법적으로 국무원 대외 경제 기관이나 지대 당국이다. 그런데 지난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결정하여 행정 조직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조직 개편에서는 **舊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고 외자 유치 주무 기관이었던 **舊대외경제위원회가 무역성으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역성이 외자 유치 주무 기관이 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설립 사전 심사 기관도 법규에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어떤 문건에 대해 어떤 기관이 심사를 맡을지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정확하지 않아 설립 과정 초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등록과 영업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역시 먼저 예상되는 것은 등록이나 영업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또한 경영 활동 가운데 등록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업종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때는 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당국의 규제 조치는 경영 활동 중에 상당한 부

〈표 7〉 등록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합영 기업	· 기업등록신청서,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기본 규약, 기업의 도장표(수표)와 같은 문건
합작 기업	· 합작 기업 등록 신청 문건
외국인 기업	· 기업등록신청서,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사본

자료: 합영기업법 시행 규정 제25조, 합작기업법 시행 규정 제27조,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21조.

〈표 8〉 영업 허가 취득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합영 기업	· 영업허가신청서,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서, 준공검사서 또는 확인서, 시제품 견본, 생산 공정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문건
합작 기업	· 영업허가신청서, 시제품 견본,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서, 준공검사서, 생산 공정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문건, 환경영향평가서, 합작기업창설승인서 사본 같은 것
외국인 기업	· 영업허가신청서, 투자검증보고서, 생산 공정 및 시설물의 안정성과 환경 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 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

자료: 합영기업법 시행 규정 제69조, 합작기업법 시행 규정 제59조,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35조.

답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출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출자와 관련하여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출자 재산의 평가 문제이다. 「외국인투자법」 제12조에서는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국제 시장 가격의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당사자 합의 기준이다. 국제 시장 가격의 경우 어떤 가격을 국제 시장 가격으로 잡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평가도 객관적인 평가 기관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향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의 출자액을 총출자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의 화폐 또는 현물 출자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출자 가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는 모든 출자 재산을 북한 원화로 계산하여 표시하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 투자자가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 당일 적용되는 무역 환율을 따라 북한 원화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외환 정책에 따라 출자 재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평가되

어 있는 환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외국 투자자의 재산 가치가 저평가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도 가운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법규의 가장 큰 결함은 당연히 법조항 내용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개방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방 초기에 북한의 법체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對북한 투자 사업을 수행할 기업이나 향후 투자할 기업에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향후 문제가 될 것인지를 인식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